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27 호

세종특별자치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세종특별자치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상위법령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정의와 조례상 정의가 서로 달라 상위법령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ㅇ 이에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정의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법령상 청년농업인의 연령을 초과하는 농업인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년농업인의 정의를 변경하지 않고 별도의 확대지원 근거를 두려는 것임.
ㅇ 아울러 농업용 드론 병해충 방제 등 특정 기술·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이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의 기본적인 조례로 재편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정의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도록 함(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 ·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마. 창업 · 경영안정, 농지 · 시설 · 장비, 교육 · 컨설팅, 유통 · 판로, 주거 · 문화 · 복지, 출산 · 육아 및 일 · 생활 균형 등 종합적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바. 법령상 청년농업인의 연령기준과 조례상 용어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여건에 따라 40세 이상 45세 미만 농업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마련함(안 제9조).
사. 미래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학교 ·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및 현장연수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아. 농업경영체의 청년농업인 고용 지원 및 후계농업인 · 청년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자. 현행 농업용 드론 병해충 방제 및 청년농업인 방제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개별 농업기술 · 병해충 방제정책과 후계 ·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을 구분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0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 의 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중 농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중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중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후계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후계농어업인단체 중 농업 분야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영농단계, 경영규모, 지역의 농업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역할)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현황 및 전망

3. 영농 창업 및 경영안정에 관한 사항

4. 농지 및 영농기반 확보에 관한 사항

5. 농업기술 및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에 관한 사항

6.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및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7. 주거·문화·복지 등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관한 사항

8.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조직화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일·생활 균형과 출산·육아 지원에 관한 사항

10.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1.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과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성별, 나이, 영농경력, 경영규모 등 일반 현황

2.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확보 현황

3. 소득·경영 및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4. 농촌 정착 및 주거·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5. 교육·컨설팅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6. 정책수요 및 애로사항

7. 지원사업의 이용 및 성과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2. 농지의 구입·임차 등 영농기반 확보 지원

3. 영농시설·농기계·장비·자재 등의 구입·임차 및 현대화 지원

4. 농업기술·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연수 및 컨설팅

5. 선도농가 등과 연계한 멘토링 및 농업현장연수

6.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및 판로개척 지원

7. 브랜드·제품 개발, 온라인 유통·판매 및 홍보·마케팅 지원

8. 정보교류, 공동활동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9. 주거·문화·복지 등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

10. 출산·육아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영농도우미 등 지원

11.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사업 지원

12. 그 밖에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영농경력 및 경영단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지원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우선지원) 시장은 후계농업인의 조기 영농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중 영농초기단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청년농업인 연령기준을 초과하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지역의 농업인구 구조, 농업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영농정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 분야의 창업을 준비하는 40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사업 및 지원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미래 농업인력의 육성 및 교육 지원) ① 시장은 미래 농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농업계열 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농업 관련 실습교육, 창업교육 및 진로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한 농업경영체와 협력하여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농업 현장연수 또는 실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 교육기관, 농업경영체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미래 농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청년농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시장은 후계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경영체가 청년농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후계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역량 강화, 정보교류, 공동영농, 권익 증진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청년농업인이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단체의 구성요건,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기준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단체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의 목적, 신청인의 자격,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중 영농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 영농기반이 취약한 사람 또는 정책적으로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4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다른 사업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목적과 지원내용 등을 고려하여 중복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효율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교육기관, 농업 관련 기관·단체, 농업경영체 및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의 관리)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관리·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거나 지원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영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후계농어업인단체”란 후계농어업인이 미래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후계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

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후계농어업인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을 하는 농어업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농어업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후계농어업교육전문가의 양성,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장소의 제공 또는 후계농어업교육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1.>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 3. 31.>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후계농어업인의 요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나이, 영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

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나이가 50세 미만인 사람

2.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 기간 또는 총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제3조(청년농어업인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에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후계농어업인단체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사업(안 제7조~제1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윤 성 규

[붙임 3]

현 행 조 례

세종특별자치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시행 2025. 11. 14.] [조례 제2892호, 2025. 11. 14.,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300-4312, 301-255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인력의 청년층 감소로 인해 농업·농촌의 성장 동력이 저하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개정, 2024. 2. 26.><개정, 2024. 7. 12.>

2의2. “후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같은 법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5. 11. 14.>

3. “청년농업인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의한 4에이치활동단체로서 청년 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 10. 4.>
4. “농업용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말한다.<신설, 2025. 3. 7.>
5.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신설, 2025. 3. 7.>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5. 3. 7.><개정, 2025. 11. 14.>

②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3. 7.><개정, 2025. 11. 14.>

제4조(지원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중장기 지원종합계획(이하 “지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3. 7.><개정, 2025. 11. 14.>

② 지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과 목표<개정, 2025. 11. 14.>
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
3.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
4.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 11. 14.>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애로사항<개정, 2025. 11. 14.>
2.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개정, 2025. 11. 14.>
3.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개정, 2025. 11. 14.>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 등) ① 시장은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5. 3. 7.><개정, 2025. 11. 1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품목별로 개설하되 참여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청년농업인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은 1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1월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④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예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18세 미만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1.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개정, 2025. 11. 14.>
2.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 사업<개정, 2025. 11. 14.>
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사업
4. 공용 공간 지원 사업
5.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7. 후계농업인단체 및 청년농업인단체의 육성<개정, 2025. 11. 14.>
8.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생산품 유통 및 판로지원<신설, 2023. 10. 4.><개정, 2025. 11. 14.>
9.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브랜드 개발, 온라인 판매체계 구축 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신설, 2023. 10. 4.><개정, 2025. 11. 14.>
10.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신설, 2023. 10. 4.>
11.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부부 자녀 출산 시 농사 보조인력 지원<신설, 2023. 10. 4.><개정, 2025. 11. 14.>
11의2.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활동 지원<신설, 2025. 3. 7.>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3. 10. 4.]

제7조의2(청년농업인 방제단) ① 시장은 제7조제11의2호에 따른 지원을 위해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이하 “방제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제단을 대상으로 농업용 드론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제단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방제비, 장비 및 장비운용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7.]

제8조(신청 및 선정) 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 신청서(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와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전문인력 육성) ① 시장은 후계농업인단체 및 청년농업인단체의 조직구성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③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 다만, 연구개발·시범사업 등 시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2. 26.>

제13조 <삭제, 2024. 2.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